

부 칙

경운대학교 학생상담및지도에 관한 규정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(이하 "우리대학교"라 한다)의 학생상담 및 지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담 및 지도대상) 상담 및 지도대상은 우리대학교 전체 학생으로 한다.

제3조(지도교수) 지도교수는 학과(부)에 소속된 전임교원으로 하며, 매 학기 초에 학과(부)장이 소속 학과(부) 교수의 협의를 거쳐 배정한다.

제4조(학생상담 및 지도 운영) ① 지도교수는 의무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담당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지도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학생상담 및 지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출결석사항, 학업성취도 등 학업에 관한 사항
2. 수강신청, 휴학, 복학 등 학사에 관한 사항
3. 동아리활동, 사회봉사활동 등 교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
4.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사항
5. 학사경고자상담, 복학생상담, 편입생상담, 진로설계 집단상담 등

③ 지도교수는 Office hour를 주당 8시간 이상 설정하고 이를 시간표에 공지하고 Office hour 시간에는 연구실에 상주하여야 한다.

④ 상담은 1:1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대면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상담 이나 E-Mail 등을 통한 별도의 방법으로 상담 할 수 있다

⑤ 상담 실시 후 필요에 따라서 학생생활상담센터, 커리어개발지원센터, 취업지원센터, 교수학습지원센터, 인터넷서널센터, 학생생활관,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진로·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부서에 연계 상담신청을 의뢰하여 심층상담이 가능토록 한다.

제5조(상담결과처리) ① 지도교수는 반드시 매회 상담한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한다.

②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나 연계 상담신청 시 연계기관에서의 심층상담을 위해서 학생의 동의를 받아서 상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.

제6조(지도교수 업적평가) 지도교수의 학생상담 및 지도에 대한 업적평가는 「교원업적평가규정」 제10조(교육업적)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